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

편집 :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477 호

1974.12.31.

시 보

차 례

○ ◎조 례

제 902 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..... 3

제 903 호 서울산업대학설치조례..... 4

◎고 시

제 201 호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) 일부변경결정 및
지적승인..... 5

◎공 고

제 73 호 (동대문구공고) 시장개설허가취소 6

○ ◎사 명..... 6

1. 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사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

1974년 12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902 호

서울특별시청소사업비
특별회계 설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며 청소비특별회계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특별회계의 설치) 청소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사업비특별회계 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계년도)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의 예에 준한다.

제 4 조 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오물수거수수료와 폐각대,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의 보조금 기타 사업에 부대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5 조 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쓰레기 및 분뇨사업의 운영비
2. 청소장비의 배입
3. 차입금 거채등의 장환
4. 쓰레기 및 분뇨사업관리
5. 쓰레기 및 분뇨수거차리에 관한 조사연구
6. 쓰레기 및 분뇨처리 시설의 건설
7. 기타 부대사업의 경영관리

제 6 조 (부담구분) 전조 각호의 지출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하되 이의 부족예산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.

제 7 조 (준용)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 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 산업 대학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4년 12월 31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903 호

서울산업대학설치조례

제 1 조 (대학설치) 대학교육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, 연구하고 아울러 수도권 개발 과 시민생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산업대학을 설치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위치) 명칭은 서울 산업대학 (이하 " 대학 " 이라 한다) 이라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전농동 산 8 의 3 에 둔다.

제 3 조 (교직원 및 하부조직) ① 대 학에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제임강사, 조교등의 교원 (이하 " 교 원 " 이라 한다) 을 두고,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 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 다.

② 전항의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중

학사에 관하여는 학칙에 의하고 직 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학장은 대학의 교원중 교수 및 부교수와 과장 (課長) 및 과장 (科長) 의 임용 또는 제정물을 할때에 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 시장 " 이라 한다)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조 (학장) 학장은 대학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 한다.

제 5 조 (감독) 대학의 학사업무는 교육법제 8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 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,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.

제 6 조 (학과설치 및 학생정원) 대 학 에 설치하는 학과와 과별 학생 정 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학칙개정)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, 학생정원의 증감과 학과의 설치 및 폐지 기타 제정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.

제 8 조 (부설연구기관) ① 대학에 수도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필요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의 서울산업대학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고 시

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6 호(74.1.5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12.30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 호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

단위: ㎡

시 설 명	면 적			비 고
	기 정	변 경	확 정	
정농유원지	255.000	178.732	76.760	
우이유원지	776.863	80.000	696.863	
새김유원지	405.540	271.908	133.632	

※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공 고

◎ 동대문구제 73 호

시장개설허가취소

시장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하였기 공표함.

- 1. 허가번호: 동대문 21 호
- 2. 소재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268 의 5
- 3. 시장명: 중화시장
- 4. 개설자: 중화상공주식회사
- 5. 대표자: 이 병 준

- 6. 취소일자: 1974.12.30
- 7. 취소근거: 시장법 제 7 조 2 항 규정
1974.12.30.

서울특별시

사 명

◎ 1974.12.26

동대문구 지방행정
주도사업소 서기보 박남순
전라남도 고흥군전출을 경함.

◎ 1974.12.29

영동출장소 지방행정
서기보 박선규
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.

서울특별시